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 - 84호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2021.5.31.일자에 공고하였던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 시험 시행계획(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58호) 중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안내하고자 2022년도 제86회 하반기(2021년 하반기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의료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① 제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 공지하였으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4호, 2021.1.12.), '21년 7월 16일 서울고등법원(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따라 **상반기 시험 응시자도 하반기 시험의 원서접수가 가능함.**

□ 소송 경과

- '21.4.9. 상반기 시험 불합격자 일부(33인)가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21.6.1. 집행정지 기각(서울행정법원)
- '21.7.16. 집행정지 일부 인용(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항고심)
 - * 결정내용 : "제86회 상반기 응시자의 하반기 실기시험 응시제한을 본안소송 1심 판결일부터 30일간 정지한다"는 일부 인용 결정
- '21.7.22. 본안소송 1심 원고 패소(서울행정법원)

□ 집행정지 일부 인용의 의미 및 향후 응시관련 변동 가능사항

- 집행정지 일부 인용은 원고의 최종적 권리구제가 아니라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제한 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임
-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집행정지 일부 인용 판결에 재항고하였음('21.7.23.)
- 또한, '21년 7월 22일 본안소송 1심은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시험 응시제한 공고는 합당하다는 원고 패소 결정을 내림
- 따라서 7월 16일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상반기 시험 응시자가 하반기 시험에 접수를 하였더라도 본안소송 최종 결과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국시원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려 혹은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②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특례 적용에 따라 개천절(10.3)과 한글날(10.9)에 대한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시험일을 10월 29일 종료에서 11월 2일 종료로 변경하고자 함

2021. 7. 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의료법」 제5조, 동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4.11.) 제9조 또는 동법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2.1.) 제2조, 동법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8.2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의사 국가시험은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단,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제86회 상반기 시험 응시자는 동일회차 시험인 제86회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 공지하였으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4호, 2021.1.12.),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2021루1225)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제86회 상반기(2021년 상반기 시행)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기 응시했던 응시자도 임시적으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함. 단, 추후 본안 소송 및 집행정지 재항고 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험일정 등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응시수수료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예정일	시험장소
<인터넷접수> 2021. 7. 26.(월) 09:00 ~ 7. 30.(금) 18:00 ※ 방문접수 없음	620,000원	2021. 9. 1.(수) ~ 11. 2.(화) ※ 총 40일간	2021. 11. 26.(금) 11:00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 (실기시험센터)

- 시험장 주소 및 교통편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서울 광진구 자양로 45)
지하철 2호선 구의역 4번 출구 잠실대교 북단방향 도보 15분
- 시험기간은 실제 접수결과(응시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인터넷(www.kuksiwon.or.kr) 접수

※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구분	인터넷 접수
접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7. 26.(월) 09:00 ~ 7. 30.(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 2022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접수 가능함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www.kuksiwon.or.kr)
응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0,000원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 가상계좌 입금 *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बैं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함 *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 부담 ■ 감면 자격확인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로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함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 스캔 시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 접수 관련 문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객센터(1544-4244)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고,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편의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 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 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 단, 100% 환불기간 경과 후부터 시험일 5일 전까지(환불요율 50%)는 방문, 우편 및 팩스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환불 관련 문의 : 전화 1544-4244

다.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 2021. 7. 26.(월) ~ 8. 6.(금)

라. 개인별 시험일 안내(응시표 출력) : 2021. 8. 3.(화)부터

4 시험방법 등

가. 시험방법

- 응시자는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안내에 따라 10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 * 각 시험실에서 퇴실한 응시자는 해당 시험실에 재입실할 수 없습니다.
- 평가자는 응시자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평가합니다.

나. 문항유형 및 평가내용

문항유형	평가내용
■ 종합문항	병력청취, 신체진찰, 의사소통, 태도, 기본수기

다. 출제문제수, 배점 및 시험시간

구분	출제문제수	배점		시험시간(1문제당)
		1문제당	만점	
종합문항	10문제	100점	1,000점	12분

라. 시험시간표

응시자는 반드시 본인이 응시하여야 하는 배정된 시험일의 해당 사이클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실기시험센터에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사이클	응시인원	입장시작	입장완료*	시험시간
월요일**	2	60명	11:40	12:10	12:55~15:28
	3		14:35	15:05	15:50~18:23
화요일 ~ 금요일	1	90명	07:45	08:15	09:00~11:33
	2		11:40	12:10	12:55~15:28
	3		14:35	15:05	15:50~18:23

* <입장완료> 시간은 응시자가 실기시험센터(국시원 본관 1층)에 입장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임

** 실제 접수결과(응시인원)에 따라 월요일에도 90명 응시 가능(3개 사이클 운영)

5 합격자 결정(발표) 및 면허증 교부신청

가. 합격자 결정(「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3] 참조)

의사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2020-121호, 2020.6.16)에 의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함

나. 합격자 발표 및 이의제기

- 합격자 발표예정일 : 2021. 11. 26.(금) 11:00
- 합격자 발표방법
 - *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 * 휴대전화 문자(SMS)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 자에 한함)
- 이의제기 기간 : 2021. 11. 26.(금) ~ 30.(화) 18시까지

다. 면허증 교부신청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여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행계획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까지 아래 준비물을 가지고 실기 시험센터(국시원 본관 1층 현관)에 입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응시자 준비물] 신분증, 응시표, 가운, 청진기, 펜라이트(신규 추가)

단, 응시자대기실에서 응시자 교육 후 각 시험장 이동시간 전까지는 입장을 허용합니다. 아울러, 시험 전 응시자 교육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고, 시험장 이동시간 이후 입장은 결시 처리합니다.

응시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로 지참 및 결시한 경우,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국시원에서는 별도 심사위원회에서 검토 후 조치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나. 응시자는 배정된 시험일자 및 사이클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응시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 중 시험기기를 외부 유출 또는 시험 종료 후 제출하지 않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자.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기준]

‘응시자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

차.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카. 실기시험센터 주변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특히 실기시험센터에는 주차 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문항, 채점표, 채점기준표 및 응시동영상은 시험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 응시동영상은 실기시험의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로서 시험종료 20일 후 폐기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항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저작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있음
-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항 일부 또는 전부를 블로그, 카페 등에 복원하여 게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비 응시자 안내 사항은 별도 안내된 사항을 참조하기 바람(2021.7.19.),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침